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 자 순

편집장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481 호

1975.1.27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917 호 :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..... 3

제 918 호 :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..... 3

◎ 규 칙

제 1442 호 : 서울특별시수도관리사업소지체..... 4

제 1443 호 :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..... 5

제 1444 호 :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운영규칙중
개정규칙..... 15

제 1445 호 :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
개정규칙..... 22

제 1446 호 :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규칙..... 22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1975년 1월 27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917호

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설치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중 "와수도요금의 부과징수"를 삭제한다.

제 2 조 중 "구수도사업소"를 삭제한다.

제 3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

이 따로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.

제 4 조 중 제 3 호를 삭제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1975년 1월 27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918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6 조 중 "수도사업소장"을 "구청장 또는 수도사업소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수도관리사업소직제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1975년 1월 27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442 호

서울특별시수도관리사업소직제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
수도관리사업소 (이하 " 사업소 " 라
한다) 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
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소장)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
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
방토목기사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
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.

제 3 조 (공무원의 정원) 사업소에 소
장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
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4 조 (사무분장) ①사업소에 서무계

· 자재계 : 공무제와 양수제를 두고
서무계장과 자재계장은 지방행정주
사로 공무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
양수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.

②사업소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
각호와 같다.

1. 서 무 계

가. 문서, 관인 및 기밀에 관한
사항

나. 청중 단속 및 당지에 관한
사항

다. 인사에 관한 사항

라. 경리에 관한 사항

마. 차량유지 관리 (본청차량포함)

바. 타계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
는 사항

2. 자 재 계

가. 상수도 자재출납보관

나. 급수자재검사 및 철관수압검
사

다. 철거자재의 제생활용

3. 공 무 계

가. 75%이상 급수관의 누수방
지공사

나. 50%이하 급수관의 지하누수 방지공사

다. 누수탐지 작업

4. 양 수 제

가. 교장양수기 수리

나. 양수기 성능검사

제 5 조 (지무대행)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제장이 그 지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규칙) 1964.7.27 규칙 제 418 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지제는 이를 폐지한다.

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5년 1월 27 일

◎서울특별시규칙 제 1443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3 항, 제 3 조의 2, 제 4 조, 제 6 조제 3 단, 제 8 조제 1 항내지 제 5 항, 제 9 조, 제 10 조, 제 15 조제 1 항중
• 환할수도사업소장 • 을 • 구청장 • 으로 제 13 조제 2 항중 • 소장 • 을 • 구청장 • 으로 제 13 조제 1 항, 제 19 조제 1 항 및 제 2 항중 • 수도사업소장 • 을 • 구청장 • 으로 한다.

제 19 조제 3 항을 삭제한다.

별표중 2의 업무용제 1종 제 31호 • 전기용품제조업 • 을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• 으로 한다.

별지제 1 호서식내지 별지제 3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 4 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전자제품제조업에 대하여는 1975년 3월납기 징수분부터 적용한다.

◎ 남 부 장 소

①수도사업소, 구청의 시공고창구

②상업은행 본점, 지점

◎ 강 제 집 행

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

아니하면 징수처분을 단행하게

되며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

1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

합니다.

◎ 납부시는 본 독촉장을 지참하

야 합니다.

수 도 안 내

1. 수도요금은 은행에 납부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2. 수도요금을 관제 공무원이 징수
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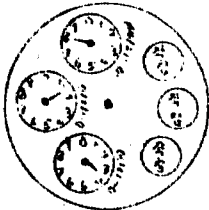
3. 체납된 수도요금은 원소유자에게
승계되오니 가옥폐색시 체납액을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4. 본 독촉장의 체납액증 이의가
있으시면 즉시 수도사업소에
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각수납정보관용)

(수요가영수증)

※ 계량기는 이렇게 봅니다.



좌기 계량기 지침수는 318입니다.

※ 수도사용량계산은 이렇게 합니다.

금월지침수 - 전월지침수 = 금월사용량

※ 계량기 검침시에는 반드시
입회하여 주십시오.

<별지제 2 호서식>																			
수도요금		고지원부			○○구					수도요금		고지서 및 납입원통지서			○○구				
주소·성명				조정량		1970년도				주소·성명				조정량		1970년도			
동				번지		남		기		동				번지		남		기	
수전 번호		업 종		정리 번호						수전 번호		업 종		정리 번호					
구분	급 사용료	수 원	용 구 손 료	원	기 타	원	합 계	원		구분	급 사용료	수 원	용 구 손 료	원	기 타	원	합 계	원	
남기내										남기내									
남기후										남기후									
송달일자 197										남부마감일: 1970. . . . 남부장소 (별지참조)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. 1970. . . . ○ ○ 구 구 청 장									
(각 고지기관보관용)										(사업소 통보용)									

◎ 납부 장소

- ① 상업은행 ② 국민은행
- ③ 서울은행 ④ 신탁은행
- ⑤ 의환은행 ⑥ 조흥은행
- ⑦ 주택은행 ⑧ 중소기업은행
- ⑨ 제일은행 ⑩ 한일은행
- ⑪ 농업협동조합 ⑫ 수산업협동조합

⑬ 지방은행 서울지점 (경기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제주은행)

⑭ 관할 수도사업소

◎ 납기가 경과되면 상업은행 본, 지점과 수도사업소 및 구청 시금요청구에서만 수납합니다.

◎ 가산금

납기가 경과되면 다음의 가산금을 붙여 징수합니다.

○ 납기일 경과시 $\frac{10}{100}$ (1할)

◎ 납부시는 본 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(각 수납정보관용)

수도안내

1. 수도요금은 은행에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수도요금은 관계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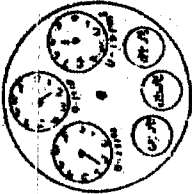
3. 체납된 수도요금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시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수요가 보관용)

수도요금		영 수 증		구		수도요금		원 부		구	
주소·성명		조정 램		1970년도		주소·성명		조정 램		1970년도	
동 번지		㎡		㎡		동 번지		㎡		㎡	
귀하		기		기		귀하		기		기	
수 전		업		정 리		수 전		업		정 리	
번호		종		번호		번호		종		번호	
구 분	금 수	용 구	기 타	합 계		구 분	금 수	용 구	기 타	합 계	
	사 용	료	원	원	원		사 용	료	원	원	원
납기내		원	원	원	원	납기내		원	원	원	원
납기후						납기후					
귀 금액 영수함				수 입 일 부 인		197					
은행 조합 지점											
이 영수증은 금봉기 관수남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.				취급자		은행 조합 지점					
수입일부인						수입일부인					

※은행의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※ 계량기는 이렇게 봅니다.



작기 계량기 지침수는 318 입니다.

※ 수도사용량계산은 이렇게 합니다.

금월지침수 - 전월지침수 = 금월사용량

※ 계량기 점검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주십시오.

<별지제 3호서식>

1970년	영 수 증		책 번 호				
수 전 번 호		일 면 번 호					
납 부 자 주 소			성 명				
동 가 번 지 호							
구 분	년	남	기	금	액	합 계 금	
수	탁	공	사	비			
가	입	금					
재	료	매	각	대			
정	수	처	분	해	제		수
정	수	처	분	해	제		수
합	계						
징 수 원 성 명			인			원 정	

징수된 성명날인이 없으면 두효입니다

※본 영수증으로는 수도요금(급수사용료)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.

서울특별시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1975. 1. 27

○ 서울특별시규칙제 1444 호

서울특별시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 별지제 1 호서식 >

제 15 조제 3 항, 제 19 조제 1 항 및 제 2 항, 제 34 조중 "수도사업소장"을 "구청장"으로 한다.

별지제 1 호서식, 별지제 9 호서식 내지 별지제 11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전면)

상수도시공업허가(갱신)신청서

처리기간

3 일

신청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생년월일		
	주소								
	상호			소재지					
자본금(개인)									
공자본금(법인)									
불입금(법인)									
종업원수	현장관리인			명	사용인				
상수도시공외영업종목									
시공기술자격증	계	호			기술자격증발행청				
<p>위와같이 귀시 상수도공사 시공업자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 하 신청인 (인)</p>									
<구비서류> 신청		경신		수수료					
1. 허가신청서	4. 재산증명서(법인체, 법인체등기부등본)	1. 허가(갱신)신청서		신청 2,000원					
2. 이력서	5. 공사기구명세서	2. 영업감찰사본		갱신 1,000원					
3. 신청증명서	6. 전화착약증명서	3. 상수도시공업허가증							
0-2002-2-1A 0-2113-1-10A		1973.12.11 승인		190mm×268mm(신문용지 50g/㎡)					

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.

(후면)

신 청 인	경 유 기 관	처 리 기 관 (관할) 수도권 제 1 과
<div data-bbox="166 543 350 60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">서 류 구 비</div>		<div data-bbox="717 543 984 60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">접 수</div> <div data-bbox="717 708 984 805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top: 10px;">서 류 및 현 장 확 인</div> <div data-bbox="717 913 984 973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top: 10px;">기 안 결 재</div> <div data-bbox="880 1017 1012 1112"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top: 10px; position: absolute; left: 150px; top: 50px;">허가대장 등 재</div> <div data-bbox="717 1147 984 1208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top: 10px;">허 가 통 보</div> <div data-bbox="717 1312 984 1373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top: 10px;">허 가 증 교 부</div>

< 별지 제 9 호 서식 >

상수도시공업자영업장소변경신고

처리기간

3 일

신청인	①성명		②주민등록번호		③생년월일	
	④주소					
	⑤상호					
⑥자본금			⑦허가사항		제호	
⑧소재지						
⑨이전지						
⑩이전사유						
⑪비고						

위와 같이 상수도시공업자 영업장소를 이전하고자 신청합니다.

19 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귀 하

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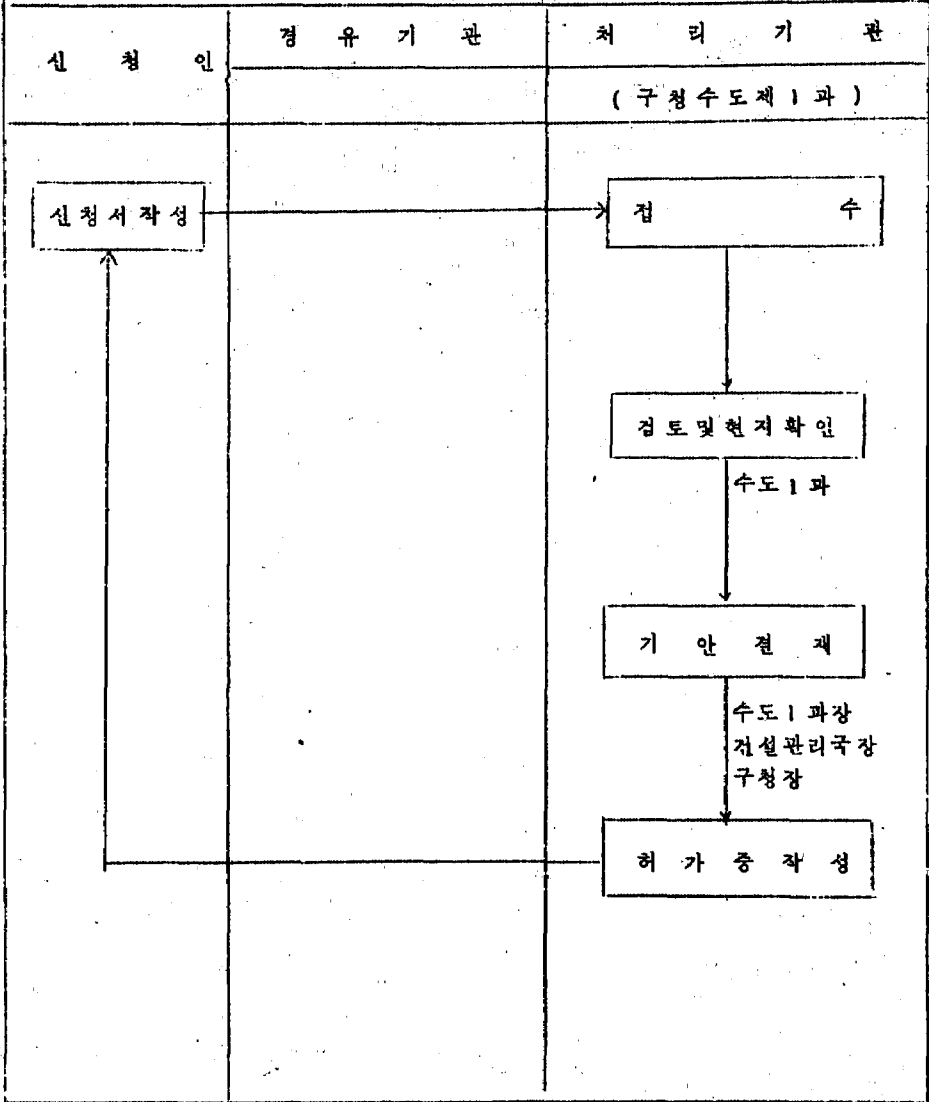
수수료

- 1. 구허가증 1통
- 2. 위치도 1통

2102-02-26 E
 5101-15-3 E
 1974-12-24 승인

190mm X 268mm (실문용지 548/매)

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<별지제 10호서식>

급 수 공 사 신 청 서

설 치 장 소	구 가 동 번 지 호 통 반
수 요 가 성 명	주민등록번호 인
용 도 및 구 경	
특 기 사 항	

급수공사를 시공하고자 일전서류첨부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 년 월 일

상 호 대 표 자 인

구 청 장 귀 하

- 첨부서류: 1.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사본
- 2. 지적도

급 수 공 사 승 인 통 지 서

설 치 장 소	
수 요 가 성 명	주민등록번호 인
용 도 및 구 경	
분 기 지 점	
분 기 구 경	

위와같이 승인하오니 실제도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월 일까 지 제출하시고 공납금 납부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.

19 년 월 일

상 호 : 구 청 장
대 표 : 귀 하

후 면

위 치 약 도

4

<별첨제 11 호서식>

급수공사도급계약서

1. 설 치 장 소 :

2. 구 정 및 연 장 :

3. 도 급 객 :

4. 공 사 기 간 :

제 1 조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수요가를 (갑) 시공업자를 (을)이라 칭한다.

제 2 조 (을)은 구청장의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후 날함 설계서에 의하여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한다.

제 3 조 (을)은 ○ ○ 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.

제 4 조 (을)은 (갑)의 승락없이 설계를 변경하지 못한다.

제 5 조 본 계약과 동시에 (갑)은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(을)에게 지불하고 잔금 일금 원정은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은후 지불한다.

제 6 조 위생 난방 기타 육내설비는 도급객에 포함되지 않으며 (갑)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(을)은 이를 따로 시공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을)이 본 계약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(갑)은 계약의 이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(갑)이 위약 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은 (을)에게 귀속된다.

제 8 조 시공중지형 지질등의 변동으로 도급액을 초과할 경우는 사전에 수도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 (갑)(을)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9 조 (을)은 본공사 준공검사일로 부터 만 1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.

제 10 조 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(갑) (을) 각 1통씩 보관한다.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구 자 훈 인

1975년 1월 27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445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68 조 제 2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유철도 전철구간의 승차권 소지자가 지하철 구간으로 월승하였을 때에는 지하철 운임을 별도 수수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구 자 훈 인

1975년 1월 27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446 호

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2 항중 "사법분야" 다음에 "및 법계분야"를 삽입한다.

제 6 조 제 2 항중 "월 각 3만원"을 "월 각 4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